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147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주요 검토사항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0

I .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6. 9.

(3) 회 부 일 : 2026. 7.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경우 그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Ⅱ. 검토 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재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34조의3(중앙방역대책본부) ①</u> <u>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행으로 인한 재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역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u> <u>② 방역대책본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된다.</u> <u>③ 방역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 주요 검토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감염병의 확산 상황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지정하고 있음.
-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별표 1의3]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제21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① 재난관리주관기관(행정각부 및 그 소속 청이 별표 1의3에 따라 공동으로 동일 재난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각부인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해야 한다.

1.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역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수습본부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중앙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 훈령)」은 질병관리청에 설치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운영 시기,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 질병관리청 소관 재난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등에 설치되고,
- 감염병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 상황관리 및 초동 대응, ▲ 위기경보 발령·전파, ▲ 예방접종 준비 및 지원, ▲ 감염병 검사 및 방역업무 총괄, ▲ 피해상황 조사 및 피해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함.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중 재난 위기경보 발령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하 “재난감염병”이라 한다)의 발생 및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운영시기)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설치·운영한다.

1. 질병관리청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3. 질병관리청 소관 재난 및 사고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중앙방역대책본부의 기능과 역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재난 등 발생 시 상황 관리 및 보고
2. 감염병 재난 등 발생 시 초동대응 등 총괄
3. 감염병 상황에 대한 위험수준 상황판단 및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4. 감염병 대비 예방접종 준비, 시행 지원
5. 감염병 검역, 감시, 역학조사 및 검사 등 방역 업무 총괄
6.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7. 감염병 재난 등 발생 시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8.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방역대책본부 지휘 및 지원
9.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수습지원단 파견 건의
11. 그 밖에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기타 감염병 유행 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앙방역대책본부의 구성)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분부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상황총괄단장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으로 한다. 부분부장을 보좌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실무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4.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5. 그 외 상황관리팀, 위기소통팀, 행정지원단, 역학조사분석단, 방역지원단, 의료기관·시설관리단, 진단분석단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편성인력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관계) 감염병 재난의 대비 태세 구축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동 규정에 따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간주한다.

□ 또한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시 위기경보 단계별로 ‘주의’ 단계에서는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설치되고, ‘경계’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는 한편,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계속 운영됨.

□ 마지막으로 ‘심각’ 단계에서는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이 이루어지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계속하여 운영됨.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범정부 차원의 자원 조달, 병상 확보, 의료인력 수급 및 제도적 지원 등 행정적·물적 수습을 총괄하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역학조사, 확진자 관리, 감염경로 추적, 백신·치료제 도입 등 방역업무를 총괄함.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 조치]

구분	위기 유형		주요 대응 활동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 <u>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병관리청)</u>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 대응 역량 정비 ·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u>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u>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 <u>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u> · <u>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운영</u> ·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검토 · 필요시 총리 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방역 및 감시 강화 등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u>범정부적 총력 대응</u> · <u>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u> · <u>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운영 지속</u>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료: 질병관리청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발생 시 국가 차원의 방역 대응을 총괄하는 핵심기구로서,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가 방역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신종 감염병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전문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범정부적 방역 대응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큼. 또한 감염병의 세계화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전문성과 상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보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확진자 발생 관리, 역학조사, 진단검사 체계 구축, 예방접종 지원, 변이 바이러스 감시 및 방역지침 마련 등을 총괄하며 국가 감염병 대응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음.

□ 개정안은 현재 질병관리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조정 등 방역 지휘 기능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와 엠폭스 발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총 3차례 설치·운영된 바 있음.

[2020년 이후 중앙방역대책 설치·운영 사례]

운영 기간	설치·운영 사유	위험정보 단계	주요활동 내역
'20. 1. 20.~ '24. 5. 1.	코로나19 확산	주의, 경계, 심각 ¹⁾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관리, 진단법 개발 및 검사체계 운영, 백신·치료제 도입 및 예방접종 체계 운영 등
'22. 6. 22.~ '23. 2. 20.	옴폭스 확산	주의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관리, 검사체계 운영, 의료진 임상 진료 가이드 개발, 백신·치료제 도입 등
'23. 4. 12.~ '23. 9. 6.	옴폭스 확산	주의	

주1) '20. 1. 20.(주의 단계 발령), '20. 1. 27.(경계 단계 발령), '20. 2. 23.(심각 단계 발령)

자료: 질병관리청

3. 관계 부처 의견

구분	제시 의견
질병관리청	<수용> ○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조정을 총괄하는 등 방역 지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방대본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행정안전부	<수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감시,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질병관리청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기관리기구임. ○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데 동의함.
보건복지부	<이견 없음> ○ 중앙방역대책본부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에 이견 없음.

문 의 처

02)6788-5496